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2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현정 • 민병덕 • 민형배

박상혁 • 박희승 • 이광희

이기헌 · 정성호 · 정준호

주철현 • 한정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에서는 "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"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는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, 제397조의2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후에 승인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97조의2).

법률 제 호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"를 "현재"로, "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"를 "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	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
의 유용 금지) ① 이사는 <u>이사</u>	의 유용 금지) ① <u>현재</u>
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	
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	
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	
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	
하여 <u>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</u> .	<u>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</u>
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	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
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	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
한다.	<u>인을 받아야 한다</u>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